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17. 7. 26.>

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(제20조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 ·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[제2호(10)의 경우에는 3년간]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5년 이상 평가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 4)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

2. 개별기준

		행정처분기준			
위반사항	관련 조항	1 =1	0-5]	0 =1	4차
		1차	2차	3차	이상
(1)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	법 제17조				
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	, ,				
기술인력 · 시설 · 장비가	제1항제5호				
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					
경우					
(가) 등록요건의 기술능력		경고	업무정지	업무정지	업무정지

에 속하는 기술인력이			1월	3월	6월
부족한 경우					
(나) 등록요건의 기술인력		등록취소			
에 속하는 기술인력이					
전혀 없는 경우					
(다) 1개월 이상 시험장비		업무정지	등록취소		
가 없는 경우		6개월			
(라) 구비하여야 하는 장		경고	업무정지	업무정지	업무정지
비가 부족한 경우			1월	3월	6월
(마) 구비하여야 하는 장		등록취소			
비가 전혀 없는 경우					
(2) 법 제16조제2항 각 호	법 제17조	등록취소		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제1항제1호				
경우					
(3) 거짓, 그 밖의 부정한	법 제17조	등록취소			
방법으로 등록한 경우	제1항제2호				
(4)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	법 제17조	등록취소			
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	제1항제3호				
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					
하는 행위를 한 경우					
(5)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	법 제17조	등록취소			
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	제1항제4호				
(6)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	법 제17조	업무정지	업무정지	등록취소	
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	제1항제6호	3월	6월		
내용을 복제한 경우					
(7)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	법 제17조	경고	업무정지	업무정지	업무정지
위반하여 평가서를 행정안	제1항제7호		1월	3월	6월
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					
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					
우					
(8)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	법 제17조	업무정지	등록취소		
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		6월			
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	·				
경우					
	H - 기 1 7 フ	어디저기	드루 친 ;		
(9) 화재위험평가서를 허위			で守行公		
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	세1 양세9오	6월			

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				
부실하게 작성한 경우				
(10) 등록 후 2년 이내에	법 제17조	경고	등록취소	
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	제1항제10			
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	호			
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				
험평가 대행실적이 없는				
경우				
(11) 업무정지처분기간 중	법 제17조	등록취소		
신규계약에 의하여 화재	제2항			
위험평가대행업무를 한				
경우				